

외교부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안

기 관 명 (부서명)	외 교 부 (재외국민보호과)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2021.1.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사건·사고 처한 재외국민 지원,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 해외송금의 지원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안 제2조)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안 제3조)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재외국민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비용 납부 동의서,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탑승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송금의 지원(안 제4조)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외송금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이 신청한 재외국민에게 해당 금액 지급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 및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을 수령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함.

라. 기 타 : 입법 예고 실시 예정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와 사전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 ·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3.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능한 경우에만한다)

제3조(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재외국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비용 납부동의서와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기 어려운 경우 탑승희망

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촬영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탑승희망자를 이동수단에 탑승시키기 전에 탑승희망자가 제출한 지불 서약서 상의 인적사항과 탑승희망자가 제시한 신분증 상의 인적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조(해외송금의 지원)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법 제19조제2항의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인지를 판단한 후 신청자의 접수 내용을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동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가족 및 연고자 등 입금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추후 정산을 위하여 입금인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및 계좌정보 등을 확인하여 영사민원시스템에 추가 입력한 후 입금인의 입금 사실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4항의 통보 접수 후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신청서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증빙자료로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과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을 수령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긴급지원비 지원 신청서

재외공관의 장(담당영사) 작성 사항								
지원 비용 항목		[] 긴급 의료비용 [] 국내 송환비용 [] 송환 전 숙식비 [] 시신 처리비용 [] 기타 필요한 비용						
지원 요청액					지원 사유			
재외공관명					담당영사			
기타 참고할 사항 (신청인의 최근 5년 이내 긴급지원비 신청여부 등)								
지원 신청자 작성사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전화번호(집/직장)			
	성별		여권번호		직업(직장명)			
	주소	- 현지 주소: - 국내 주소: - 국내 등록기준지:				건강상태 (장애/질병)		
						전자우편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직장명)	전화번호 (휴대전화/집/직장)
참고사항								
그외 연고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직장명)	전화번호 (휴대전화/집/직장)
참고사항								

구분	긴급지원비 지원 신청 경위(상세)
해당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오게 된 경위 (금회 여행 경로)	
사건·사고 발생 경위	
본인의 자구 노력 사항	
가족 및 연고자 지원 여부	
지원 요청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우측 해당란에 ☒ 표시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진단서 등 포함)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여권·여행증명서 사본(여권번호 포함), 연락처 등) -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가족 및 연고자, 가족 및 연고자의 연락처 등) -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 (필요시) 신청자를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 기록, 장애인 판정내역 확인서 등) - 그밖에 신청 자격요건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긴급지원비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 - 금융정보 등 확인 후 지원 자격 미달 시 비용 환수 목적(소송 제기 등) - 기타 대상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긴급한 보호 필요 시 대응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관 기록물(영사민원시스템 기재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준영구로 보존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 전자서류에 대하여는 신청 접수시로부터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제3자 제공 동의)

확 인
(√ 체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우측 해당란에 ☒ 표시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외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종로구청장,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공정찰단장,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지자체장,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및 소속 변호사, 귀국 항공편 항공사, 치료·입원시 해당 병원의 병원장, 입소시 해당 구호기관의 장, 기타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긴급지원비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
- 병원 입원 또는 구호기관 입소 의뢰
- 금융정보 등 확인 후 지원 자격 미달 시 비용 환수(소송 제기 등)
- 기타 대상자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여권번호, 연락처 등)
-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가족 및 연고자, 가족 및 연고자의 연락처 등)
- 신청자를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장애인 판정내역 확인서 등)
-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관련 자료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관 기록물(영사민원시스템 기재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준영구로 보존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 전자서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보 제공시로부터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 등 이용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긴급지원비 지원 신청 관련 서약

- 본인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진술 내용에 어떠한 거짓이나 부정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만일 제출서류나 진술내용에 거짓이나 부정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반환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사고 담당영사 포함)은 재외국민의 상태가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재외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영사

(서명 또는 인)

주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의 장 귀하

첨부서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1. (필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서류	2. (필수) 여권 등 사본 3. (선택) 신청자를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 (예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장애인 판정내역 확인서 등
담당공무원	1.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확인사항	2.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재외국민등록의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0조제3항은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제1항은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긴급지원비 지원은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히 그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동법 제19조제1항 단서조항).
3.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4. 대리신청을 위하여 등록대상자 본인은 아래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등(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본인은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의 긴급지원비 지원 신청을 위한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²⁾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

- (1) 본인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 제1항 등에 따른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심사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외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금융정보 등의 범위 : 뒷면 참조
- (4) 동의서의 유효기간 : 긴급지원비 신청 접수 시로부터 5년

※ 작성시 주의사항

- 긴급지원비는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히 그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은 재외국민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재외국민의 진술내용에 거짓이나 기타 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착오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긴급지원비를 지급받은 국민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을 통하여 본인이 무자력 등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등을 상환하셔야 함을 고려하여 동의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동의서에는 동의자의 신분증(여권 등) 사본과 본인이 직접 본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재외공관 담당영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이 동의서를 활용한 금융정보등의 확인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이 동의서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복지부장관 등은 이 동의서를 다시 활용하거나 추가 동의서 제출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 등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자의 무자력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서

탑승객 인적 사항 (※ 반드시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탑승자 본인	성명(한글)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국적	성별		
	국내 주소			
	연락처(휴대폰/유선)	연락처(이메일)		
	직업	직장명		
국내 본인 외 연락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국내 주소			
	연락처(휴대폰/유선)	연락처(이메일)		
본인 외 동반 탑승자 (총 명)	1. (성명)	(관계)	6. (성명)	(관계)
	2. (성명)	(관계)	7. (성명)	(관계)
	3. (성명)	(관계)	8. (성명)	(관계)
	4. (성명)	(관계)	9. (성명)	(관계)
	5. (성명)	(관계)	10.(성명)	(관계)
	※동반자 있을 시			

☐ 본인은 상기 탑승객 인적정보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탑승 거부 등 불이익을 받거나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이동수단 탑승 시 탑승 비용 환수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신분증 제시 및 촬영 등)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및

☐ 이동수단 탑승권 구입비용을 확인하였으며, [20 년 월 일]까지 해당 비용을 지정 계좌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 해당 날짜까지 탑승권 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미납 탑승비용 환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본 동의서 및 여권사본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아래의 「개인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따라 수집·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안내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우측 해당란에 ☒ 표시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영문 포함), 성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유선 및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포함), 직업, 직장명, 본인 외 연락처, 동반 탑승자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여권 사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정부임차 이동수단 탑승 및 운행 서비스제공
- 탑승 비용 환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다만, 탑승비용 미납자에 대하여는 탑승비용 환수 시까지 보유 가능, 지원대상자 보호 등 이용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동수단 탑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제3자 제공 동의)	확 인 (√ 체크)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우측 해당란에 ☒ 표시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외교부장관, ○○ 운항업체(○○항공사, ○○여행사 등),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종로구청장, 인천광역시청, 인천공항경찰단장,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지자체장 및 세무서장, 국세청장,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및 소속 변호사, 치료·입원시 ○○병원의 병원장, 입소시 ○○ 구호기관의 장, 기타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부 임차 이동수단 탑승·운행 관리업무
- 탑승 비용 환수업무 수행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 임시생활시설 운영, 병원 입원 또는 구호기관 입소 지원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영문 포함), 성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유선 및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포함), 직업, 직장명, 본인 외 연락처, 동반 탑승자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여권 사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다만, 탑승비용 미납자에 대하여는 탑승비용 환수 시까지 보유 가능, 지원대상자 보호 등 이용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본인은 위 요청 사항과 첨부 서류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주

신청인
대사관·총영사관(

분관·출장소)의 장 귀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

안내사항

1. 외교부는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신속해외송금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마약, 도박, 자금세탁 등 불법 또는 탈법을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
 - 상업적 목적의 송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속해외송금 신청 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① 신속해외송금 신청인은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 경비 지원을 신청 → ② 재외공관은 신청인에게 신청 승인 및 송금 절차를 안내 → ③ 신청인은 입금예정인이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연락하여 외교부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안내 → ④ 입금예정인은 영사콜센터에 송금 절차를 문의 → ⑤ 영사콜센터는 입금예정인에게 입금할 계좌정보 및 입금액을 안내 → ⑥ 입금예정인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가 지정하는 협력은행 계좌로 입금 → ⑦ 입금을 완료한 입금인은 영사콜센터로 입금 사실을 통보 → ⑧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을 통보 → ⑨ 재외공관은 신청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 수령) → ⑩ 재외공관은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신청인으로부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과 영수증을 수령 → ⑪ 외교부는 협력은행에게 송금 후 남은 잔액이 있을시 입금인에게 환불할 것을 요청

신청자 및 입금인 관련 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연락처	
	신청일자		신청금액 (화폐명시)	
입금(예정)인	성명		차액환불계좌 은행명	
	신청자와의 관계		차액환불계좌	
	연락처		예금주명 차액환불 계좌번호	
신청사유 (사용용도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우측 해당란에 ☒ 표시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영문 포함), 생년월일, 연락처, <u>여권번호</u>, 입금예정자(가족 및 연고자 등) 성명, 입금예정자의 신청인과의 관계, 입금예정자의 연락처, 차액환불계좌 예금주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5조의 신속해외송금 절차 진행 - 신속해외송금 사후 정산 절차 진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관 기록물(영사민원시스템 기재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준영구로 보존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 전자서류에 대하여는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제3자 제공 동의)	확 인 (√ 체크)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우측 해당란에 ☒ 표시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외교부장관, ○○○은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5조의 신속해외송금 절차 진행 - 신속해외송금 사후 정산 절차 진행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영문 포함), 생년월일, 연락처, <u>여권번호</u>, 입금예정자(가족 및 연고자 등) 성명, 입금예정자의 신청인과의 관계, 입금예정자의 연락처, 차액환불계좌 예금주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관 기록물(영사민원시스템 기재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준영구로 보존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 전자서류에 대하여는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해외송금 이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속해외송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주 대사관 · 총영사관(분관 · 출장소)의 장 귀하

해외송금 영수증

본인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해외송금 결과에 따라 () *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지원금액 및 화폐명(달러화 USD, 유로화 EURO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 대사관 · 총영사관(분관 · 출장소)의 장 귀하

〈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연 락 처	(02) 886 - 6212